



녹 의: 제21 - 275호

2021년 10월 29일

수 신: 병(의)원장

참 조: 진단검사의학과, 병리과, 핵의학과, 보험심사과

제 목: **검사정보 변경 안내**

1.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본 재단에서 시행하는 검사항목 중 일부 항목의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진료 및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3. 변경에 따른 귀원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

- 아 래 -

## 1. 검사정보 변경

검사항목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<b>SARS-CoV-2 Ab (Anti-N)</b> (GC Labs 코드: P819)	<b>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66호 의거</b> (고시 제·개정일: 2021년 10월 28일)	· 보험정보: 신의료 비급여 · 검사수가: 50,000원	· 보험정보: <b>누654나/D654226C (199.61점)</b> · 검사수가: <b>17,490원</b> 【적용일: 11월 01일 접수분】
<b>SARS-CoV-2 Ab (Anti-S1 RBD)</b> (GC Labs 코드: P820)		· 보험정보: 신의료 비급여 · 검사수가: 50,000원	· 보험정보: <b>누654나/D654226C (199.61점)</b> · 검사수가: <b>17,490원</b> 【적용일: 11월 01일 접수분】

### · SARS-CoV-2 항체검사[정밀면역검사]의 급여기준

1. 누654나(1) 정밀면역검사-바이러스항체(바이러스별)-IgG-(26)SARS-CoV-2 검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.

- 다 음 -

- 가. 다기관염증증후군(MIS)이 의심되어 감별진단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
- 나.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  - (1) 누658라 핵산증폭-정성그룹4-SARS-CoV-2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 검사 결과가 2회 이상 음성 또는 미결정인 경우
  - (2) 임상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

2. 상기 1.나.의 경우 최초 항체 검사에서 음성이지만,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2주 이후 1회 추가 인정함.

[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66호]

## 2. 수탁중지

검사항목	중지사유	적용일
<b>Isoagglutinin titer</b> (GC Labs 코드: H924)	재위탁기관에서 수탁중지	<b>10월 20일</b> 접수분 (기접수분부터 적용)

의료법인 녹십자의료재단  
[직인 생략]